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58,043,877	52,741,316
일반회계	1,520,869,624	45,626,089
특별회계	237,174,253	7,115,228
공기업특별회계	177,103,397	5,313,10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5,785,578	1,073,5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391,145	1,841,73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926,674	2,397,800
기타특별회계	60,070,856	1,802,126
주택사업특별회계	390,819	11,725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436,680	163,1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2,000	66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252,631	67,579
교통사업특별회계	21,154,683	634,64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8,817,751	864,53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996,292	59,88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86,551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6,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